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주복4블록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및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신청 안내문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 사전 신청하여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된 경우에도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위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및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2026.10.22.(목)]**에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 관련 정보는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홈페이지(www.gtx운정중앙역시티프라디움.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4BL(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00-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5층 4개동, 4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시기 : 2030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내역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m²)					본청약 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민영 주택	060.9995	60	60.9995	23.8228	84.8223	60.8114	145.6337	22
	084.9594	84	84.9594	29.9723	114.9317	84.6974	199.6291	185
	공급세대 합계							207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대상자 (괄호안의 수는 예비대상자 수)		
		60	84	합계
이주대책 대상자(철거민)		1(5)	-	1(5)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	2(10)	2(10)
	장기복무제대군인	-	2(10)	2(10)
장애인	서울특별시	-	2(10)	2(10)
	경기도	1(5)	4(20)	5(25)
	인천광역시	-	2(10)	2(10)
북한이탈주민		-	1(5)	1(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4(20)	4(20)
중소기업 근로자		-	1(5)	1(5)
합계		2(10)	18(90)	20(100)

-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총 78세대 중 2세대(일반공급 세대의 3% 이내)

(단위 : 세대)

구분	60	84	계
일반공급	10	68	78

-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추천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 가능)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 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6.10.22.(목)		당사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회신	2026.10.27.(화)		당사 담당자에게 명단 송부(공문참조)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6.11.02.(월)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현장접수처 방문청약	2026.11.02.(월) 10:00~14:00	※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당첨자발표	2026.11.11.(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계약체결 기간	2026.11.25.(수) ~ 2026.11.29.(일)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 ※ '20.03.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홈)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별도문의 1899-6995)

-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선정 방법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통장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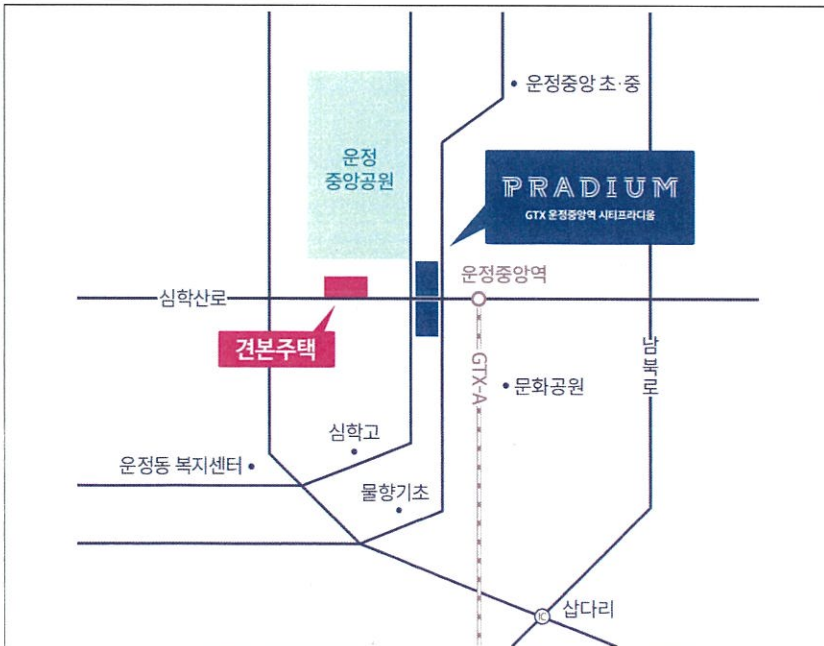
■ 입주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부의 중복청약 및 중복당첨 처리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을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II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 복합7-1블록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 분양문의 : ☎ 1899-6995



※ 당 아파트 관련 정보는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홈페이지(www.gtx운정중앙역시티프라디움.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